

「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농업기계 구입 지원 범위를 재정비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
-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용자 및 보조금 지원 한도액 등 지원범위에 대한 내용 삭제(안 제3조)
-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기준 재정비(안 제8조)
- 간사의 주체 명확화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 가능범위에 대한 사항의 재정비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의 명칭 현행화를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는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, 기존 “융자지원 한도액 100만원 이상인 농업기계”로 제한하던 사항을 “농업기계”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대형화되어가는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,

다만, 제2항에서 “농업인별 보조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”의 규정의 삭제로,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한도가 사라짐에 따라 기종에 따른 혜택 금액의 차이 발생으로 고가의 농업 기계의 신청 집중 및 농가 간 경제적·기술적 격차의 심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. 따라서 본 안의 개정에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8조에서는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, 애매모호한 기준의 재정비로 시민들의 법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